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9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 박홍배·송재봉·민병덕

이수진 • 윤준병 • 박정현

서미화 · 황명선 · 김한규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 근거를 위한 보수총 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 「소득 세법」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 무가 있어,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.

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,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,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10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사업주가 「소득세법」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,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	제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사업주가 「소득세법」등에
	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
	관할 세무서장, 지방 국세청장
	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
	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을
	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
	<u>수 있다</u> .
<u>⑦</u> ・ <u>⑧</u> (생 략)	<u>⑧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	과 같음)